

# 부록 2

## 참고서식



[붙임 제1호서식] (본문 제20쪽 관련)

## 표준 입법예고 공고문안

○○부(처·청) 공고 제2020-000호

「◇◇◇◇법 시행령」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부(처장·청장)

###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정(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 <제정(개정)이유 예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 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 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 주요내용 예시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관(처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동 ○○부 □□□□과(담당관실)

- 전자우편 : ○○○○○○○@korea.kr

- 팩스 : 000-000-0000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 □□□□과(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 ○. ○○.

○○○○부

□□□□과

##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 1. 주요 내용

이 협정안은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  
-----하려는 것임.

### 2. 주요 검토사항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  
-----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 1) ----- 조약 해당 여부
- 2) ----- 조약 해당 여부

### 3. 검토의견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 조약,  
-----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제4호서식] (본문 제49쪽 관련)

## 안 심사보고서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결 재 자	
접수일	20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법제(심의)관	처 장	
심사 보고일	20 . . .				
보존기간	영 구				
검 토 자	차 장				
	○○법제국장				
협 조 자	합의 법제(심의)관				
제 목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관서	국무위원 ○○○(□□□□장관)				
<p>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심사경과보고: 별첨</p> <p>* 법령안 기본정보<sup>80)</sup></p>					
특기사항	국정과제	하위법령 제때마련	기타 법제정비	지자체 협의·통지	대상 실시
	국회 계류 법안 대비 중복 여부	공동소관 법령 확인 결과		조례 정비 필요 여부	
일 정	시행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p>* 기타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 사유</p> <p>* 공동소관 법령 별도 개정 추진 사유</p>					

80) 「법령안 등 심사보고·제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별지 제1호서식은 필요 시 결재표지에 법령안 기본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령안 기본정보 양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심사경과 보고서

20 . . .

법령명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심의)관	◎ ◎ ◎	소관부처	○○○부
담당자		10년 경과 시 공개 여부	공개 ( ) 비공개 ( )

### 1. -----에 관한 규정(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 가. 원안의 내용

○

#### 나. 원안의 취지

○

○

#### 다. 문제점

○

#### 라. 검토의견 및 심사안

○

### 2. ---제도의 신설(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붙임 제6호서식] (본문 제68쪽 관련)

## 제 회 차관회의 결과

- 일시 : 20 년 월 일(목) 10:30,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의안 : 총 ○○건
  - 법 률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대 통 령 령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일 반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부 처 보 고 : 차관회의 보고 ○건

의 안 번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비 고
법 률 안 ( ○ 건 )					
	20 . .	교육부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 통 령 령 안 ( ○ 건 )					
	2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의결	
	"	국방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 건 )					
	20 . .	재 정 경제부	○○○○○○○○○○○○○○○안	원안 의결	

○ 부 처 보 고 : ○ 건

1. ○○○○○○○○○○○○○○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span style="float: right;">( 국 무 조 정 실 )</span>
--

[붙임 제7호서식] (본문 제69쪽 관련)

## 제 회 국무회의 결과

○ 일시 : 20 년 월 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총 ○○건
- 법 률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건
  - 대 통 령 령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건
  - 일 반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건
  - 부 처 보 고 : 국무회의 보고 ○건

○ 차관회의 심의안건 : ○건

의 안 번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국 무 회 의	비 고
법 률 안 (○건)					
	20 . .	교육부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 통 령 령 안 (○건)					
	2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의결	
	"	국방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건)					
	20 . .	재 정 경제부	○○○○○○○○○○○○○○○안	원안 의결	

○ 부 처 보 고 : ○건

1. ○○○○○○○○○○○○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 무 조 정 실 )
-------------------------------	---------------

[붙임 제8호서식] (본문 제69쪽 관련)

## 원안수정내용

###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 원안수정내용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부 소관)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 원안·최종상정안대비표

원 안	최 종 상 정 안

[붙임 제9호서식] (본문 제70쪽 관련)

##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칩

## 원안·수정원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붙임 제10호서식] (본문 제70쪽 관련)

# 국무회의 수정안

##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 국무회의 수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칩

##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붙임 제11호서식] (본문 제71쪽 관련)

#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

##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칩

##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붙임 제12호서식] (본문 제72쪽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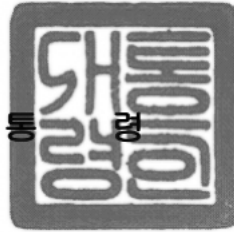
##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국회의장  
(경유)  
제 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25. 12. 16.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첨 부 : 1부. 끝.

대



기안책임자	전준수	법제정책총괄과장	임지연	법제관	유철호
법제정책국장	김진	차장	최영찬	법제처장	조원철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시행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901460	(2025. 12. 16)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	044-200-6563	전송 044-200-6958	/ obaram0093@mail.go.kr	/	대국민공개

##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5. 11. 28. 제429회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025. 12. 2.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

기안책임자	전준수	법제정책총괄과장	임지연	법제관	백종운
법제정책국장	김진	차장	최영찬	법제처장	조원철
해양수산부 장관	<i>김민석</i>				
국무총리			대통령		<i>이재명</i>
시행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901424		(2025. 12. 02)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	044-200-6563	전송	044-200-6958 / obaram0093@mail.go.kr		/ 대국민공개

국 회 에 서 의 결 된

부 산 해 양 수 도 이 전 기 관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을

공 포 한 다 .

대 통 령 이 재 명



2025년 12월 04일

국 무 총 리 김민석

국 무 위 원 김민석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붙임 제14호서식] (본문 제72쪽 관련)

##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5. 8. 12.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기안책임자	전준수	법제정책총괄과장	김한울	법제관	유철호
법제정책국장	김진	차장	김창범	법제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 소관)	윤호중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시행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901013			(2025.08.12)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 044-200-6563	전송 044-200-6958	/ obaram0093@mail.go.kr		/	대국민공개

부록  
2

참고서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2025년 08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 소관) *윤호중*

[붙임 제15호서식] (본문 제80쪽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 (법 률 )안 첩 회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법(법률)안 철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년 월 일 국회에 제출한 --- 법(법률)안을 별지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법(법률)안, 별첨

## ○○○법(법률)안 철회안

정부가 20 년 월 일 국회에 제출한 ○○○법(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 이유

20 년 월 일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월 일 국회에 제출한 ○○○법(법률)안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법(법률)안에 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철회하려는 것임.

[별 첨]

○○○법(법률)안

(기 제출한 법률안 내용)

[붙임 제16호서식] (본문 제84쪽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 (법 률 ) 공 포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 (법제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 1. 의결주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제○○회 국회(정기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3.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개정이유

-----  
-----  
-----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도의 도입

-----.

나. -----

##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략)

[붙임 제17호서식] (본문 제84쪽 관련)

**법률공포안 제안설명자료**

- 제00회 국무회의(2025. 00. 00.) -  
2025. 00. 00.

결 재	기안	법제정책 총괄과장	법제정책국장	차 장	처 장

협 조	○○○ 법제심의관	행정법제국장
	○○○ 법 제 관	
	○○○ 법제심의관	경제법제국장
	○○○ 법 제 관	
	○○○ 법 제 관	사회문화법제국장
	○○○ 법 제 관	

## 법 제 처

**제0000호 ~ 제0000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00건 안전요약서(법제처)**

**□ 제안이유**

○ 제000회 국회(정기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 . .)된 법률안 00건 공포

※ 제00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총 000건 중 000건은 공포 완료

**□ 공포대상 주요 법률안**

구 분		법 률 안
정부제출 (00건)	대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정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0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대안·수정의결 등 상세내용은 별첨 1의 목록과 별첨 2의 주요내용 참조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재의요구 여부: 없음**

[별첨 1]

## 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목록

※ 음영은 하위법령 마련 필요 법안임.

의안번호	법률제명	관계부처	제안 구분	의결 구분	시행일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법률안 목록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소관부처의 순서로 하고, 소관부처의 법률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률제명 순서로 한다.

[별첨 2]

## 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주요내용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국회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중 -----를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국회의결과정에서 -----를 허용하는 등의 의원발의 법률안 0건이 포함되어 대안의결 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붙임 제18호서식] (본문 제85쪽 관련)

### ○○○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

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의결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하였고 재의요구의견, 명백한 오·탈자 또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소관부처 및 부서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확인자: (직위 및 성명)

확인일자: 20 . . . .

① 재의요구의견 유무		② 오·탈자 유무,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비 유무, 인용법률 및 조항의 이상 유무		③ 국회 의결 내용과의 상이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일치	
④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시행일	대통령령 위임조문	총리령·부령 위임조문		향후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고: 월 일 ~ 월 일</li> <li>■ 규제심사 등: 월 일 ~ 월 일</li> <li>■ 법제처 심사: 월 일 ~</li> <li>■ 차관회의: 월 일</li> </ul>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기재

※ 이송된 법률안은 의결후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거친 것이므로 본회의 의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붙임 제19호서식] (본문 제85쪽, 제127쪽 관련)

0000법 일부개정법률 확인

일 자	서기관 (사무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법제국장
2025. . .			

위 법률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함.

1. 제·개정 법률안의 이상 유무

① 오·탈자 등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②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비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③ 인용법률 및 조항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④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지 유무(ex. 제0000호 ~법률)

-

⑤ 그 밖의 오류 유무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3.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제·개정 필요 여부  
(필요 여부 “V”표시.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뒷면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제·개정 필요( ) / 불필요( )

4. 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필요 여부  
(필요 여부 “V”표시.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뒷면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십시오)  
- 조례 제·개정 필요( ) / 불필요( )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 경우에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안으로 선정
- 다만,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더라도 ① 국정공백 우려가 없고 ② 집행상 문제가 없으며 ③ 하위법령 위임사항이 경미한 정비사항으로서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
  - ① **세법**: 공포후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과세연도 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법적 공백이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② **선택적 정비사항일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드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처의 판단에 맡겨놓은 경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 실제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
  - ③ **규율 내용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상 규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
  - ④ **기관미설치, 예산미확보 관련 법령**: 기관, 시설 등의 설치,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기관, 시설 등이 물리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설치 또는 예산확보시까지만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되는 경우
  - ⑤ **경미한 정비사항일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법률의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정비사항인 경우(단순한 용어 변경, 시험관련 법령에서 시험 시행에 부가적인 경미사항의 변경,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경미한 구성·운영 사항 등을 위임한 경우 등)
  - ⑥ **그 밖에 위 유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 소관 법제(심의)관실, 법제정책총괄과가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제때 마련 대상 제외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경우(①·②)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해당 법제(심의)관실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는 문서를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



[붙임 제20호서식] (본문 제87쪽 관련)

관보정정사항

○ 대통령령 제0000호 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 . . .자 관보 제17198호]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p>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말한다.</p>	<p>-----</p> <p>----.</p> <p>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p> <p>-----</p> <p>-----</p> <p>-----</p> <p>-----</p> <p>--- 제3호에-----</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관보 제00000호 제271쪽 제12행</p>

[붙임 제21호서식] (본문 제88쪽 관련)

## 법률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결 재 자
접수일	20 .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주무관)	법제(심의)관	처 장
심사 보고일	20 . . . .			
보존기간	영 구			
검 토 자	차 장			
	○○법제국장			
협 조 자	합의 법제(심의)관			
제 목	법률안 재의요구안			
제안관서	국무위원 ○○○(○○○ 장관) 또는 국무총리 ○○○(○○○ 소관)			
<p>위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심사경과보고: 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p>				

## 1. 의결주문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월 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법률안, 별첨

## ○○○법률안 재의요구안

20 년 월 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1. -----  
-----

2. -----  
-----

### 3. 결 론

○ -----

○ ----- 점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제22호서식] (본문 제89쪽 관련)

##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국회의장  
(경유)

제 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2024년 9월 19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9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어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2024년 9월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통령

기안책임자	권정아	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	법제관	금창섭
법제정책국장	김진	차장	김창범	법제처장	이완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성빈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윤석열	
시행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901706		(2024.09.30)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전화	044-200-6563	전송	044-200-6958 / jjeong@moleg.go.kr		/ 비공개(5)

[붙임 제23호서식] (본문 제95쪽 관련)

## 총리령안심사확인증

NO. 20240067

제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의 총리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2024. 12. 20.

법 제 처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4호서식] (본문 제95쪽 관련)

## 부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20240796

제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위의 부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2024. 12. 18.

법 제 처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5호서식] (본문 제159쪽 관련)

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의 타당성 여부 (안 제○조 관련)

※ 국무회의 토의사항을 주요 논점별로 나누어 정리

2. 원안의 내용

○-----

3. 관계부처 의견

○ ○○부 의견

-----

○ 법제처 심사의견

※ 필요한 경우 법령안 또는 부처의견에 대한 법제심의관(법제관)의 심사의견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 제시 가능한 대안, 종전의 입법례, 판례, 관계법령 등 논의에 필요한 자료 제시